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30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자원부 ~~제8~~04-131(2004. 12. 23)호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제정2001. 3. 2 산업자원부고시제2001-31호

개정2002. 9. 5 산업자원부고시제2002-81호

전문개정2003. 12.15 산업자원부고시제2003-82호

개정2004. 12. 20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1호

전문개정2007. 3. 6 산업자원부고시제2007- 30호

<개정배경>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에따른하위법령의정비(법제6조: 품질경영우수기업등.)
2. 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우수기업평가기준및 인증절차를명확히하여현실에적합하게인증제도를운영하여서비스산업의발전 꾀증제도활성화를구현코저함

<인증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서비스업으로분류되는기업중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공공행정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등11개분야55개업종

<주요개정내용>

- 전문개정
 - 동요령의체제정비및중소기업편의도
- 집행기관지정요건확대및취소요건세분화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자회사포함.
 - 인증실적이미흡한집행기관재지정고려
 - 집행기관이안정적으로업무수행토록효기간연장(2년→3년)
- 평가의종류및인증대상평가항목을구분하고세분화함
 - 신규평가, 재평가, 인증대상풀소기업과대기업으로구분하고주요평가항목을구체화함(현장평가, 고객

- 평가. 압행평가등)
- 인증심사원자격기준및선정배제조항신설
 - 심사원의자격기준강화(선임심사원, 심사원) 및선정배제조항신설
 - 인증기업의유효기간연장(2년→3년) 및재평가시지도점검면제
 - 인증기업의비용부담감및민원처리결과예보제채택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유사명칭용금지사제
 - ※ 국민의권리위무외직결되는사항으로법률의근거가있어야함.
 - 인증서에업무의범위를확기하여인증대상을명확히구분함

※ 본내용을보시려면

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기술표준원소식→고시·공고(492) 참고바람.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83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을
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물류표준설비 인증요령

제정2004. 7. 9 산업자원부고시제2004-74호

개정2006. 5. 8 산업자원부고시제2006-46호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주최정안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83 호: 2007. 3. 7)

二목적(제1조관련)

물류표준설비인증은특별인증에서서물류경영시스템인증으로확대됨에따라제도이외부합되게개정

㉔ 용어의정의(제2조관련)

-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용어정의(제1호)
- 물류표준설비인증업무대행기관의용어(제1호)

㉕ 물류표준설비인증대상(제4조관련)

- 물류경영시스템신설(제5호)

㉖ 물류표준설비인증기술위원회(제5조관련)

- 기술위원회간사를물류교통과에서물류설비인증업무소관부처로개정(제6항)

㉗ 물류표준설비인증평가위원회(제7조관련)

- 평가위원총위원을15인 이내에서10인 이내로개정(제2항)
- 평가위원장선출을위원회에서호선하기로개정(제3항)

㉘ 물류표준설비인증평가위원회의(제8조관련)

- 인증업무절차가NEP와 같이현장심사전에평가위원회를먼저 개최하여현장심사여부를결정하게하고이에따른현장심사원의추천에관한사항추가(제4호)
- 정기검사사외무적평가위원회개최요건을임의적개최요건으로완화
- 기술표준원장이지정하거나현장심사결과평가위원회의의의를받아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로만제한(제5호)

㉙ 물류표준설비인증심의위원회(제9조관련)

- 인증위원회명칭을신제품인증통합하계인증심의위원회로개정

㉚ 물류표준설비인증심의위원회기능(제10조관련)

- 인증심의위원회기능을평가위원회에서평가하여상정한사항추가(제6호)

㉛ 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지정신청(제17조관련)

- 인증대행기관과성능검사기관의업무독립성추진(제2항제1호)
- 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공시에받고자할때의각각별개로신청해야함(제5조제3항)
- 인증대행기관과성능검사기관의복수기관을지정(제7조제1항)

㉜ 인증대행기관또는성능검사기관의지정(제18조관련)

- 대행기관이인증업무대행기간의도래에따른기술표준원장의지정반납요구를거부하는경우에지정을취소할수있는규정신설(제1항제4호·제2항)

㉝ 물류표준설비성능검사(제22조관련)

- 물류설비성능검사시시험
- 검사장비를보유하고있지않거나, 설비가중량물또는 운반이 곤란할경우의검사 실시방법에대한 항목 신설(제6항)

□ 인증신청의철회(제26조관련)

- 인증신청을철회할수있던간을인증심사절차의변경에따라현장심사2일전에서평가위원회의최2일전으로개정(제1항)

□ 인증설비에대한지원(제27조관련)

- 인증받은자에대한정부포상정신설(제3항)

□ 정기검사등(제32조관련)

- 인증심사만편성하여영하는조항신설(제4항)
- 검사결과를기술표준원장에게보고토록한것을중위원회상정으로개정(제7항)

□ 수수료정산등(제38조관련)

- 인증수수료정산규정신설(제6항)

□ 인증기준(별표제3호관련)

- 인증심사항목및배점기준으로개정(제3-1호)
- 정기검사심사항목및배점기준신설(제2호)

□ 수수료등(별표제6호, 별표1호관련)

- 인증을신청하는우수수수료규정신설(제2호)
- 인증심사및정기검사의경우수수료부과기준(제3호)
- 인증수수료의납비징수에따라정기검사시확일적인수수료감면조항(제4호)및비고의분문
- 인증수수료산출내역신설(별표제-1호)

□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별표제6호서식)

- 인증신청서의처리절차를신청서류를접수하고평가위원회심의 후에 현장심사를실시하는절차로순서 개정(※ 구비서류)
- ※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용어전면개정(공통사항)
- 인증기관을인증대행기관으로용어정리

문의처: 신기술인증지원팀박기환사(☎2509-7289)

※ 본내용을보시려면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kats.go.kr>)
기술표준원소식→고시·공고(493)참조합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9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별표 불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K60335-2-31(4.0)차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1부: 레인지후드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31(레인지후드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 ③ K60335-2-32(4.0)차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전기마사지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32(전기마사지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 ④ K60335-2-36(5.1)차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6부: 상업용 전기조리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36(상업용 디스펜싱 기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 ⑤ K60335-2-37(5.0)차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상업용 전기튀김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37(전기후라이팬에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 ⑥ K60335-2-38(5.0)차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8부: 상업용 전기그리들 및 그리들그릴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38(상업용 전기그리들과 그리들그릴)에 한해 개별요

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㉓ K60335-2-39(5.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9부: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39(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㉔ K60335-2-40(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 디서넥트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40(에어컨 디서넥트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㉕ K60335-2-41(3.1)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전기펌프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41(35°C 미만 온도의 액체용 자기펌프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㉖ K60335-2-42(5.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2부: 상업용 전기 강제대류형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42(상업용 전기 강제대류형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㉗ K60335-2-44(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전기주름펴기(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44(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㉘ K60335-2-48(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8부: 상업용 전기 그릴과 토스트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48(상업용 전기 그릴과 토스트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㉙ K60335-2-49(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49(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㉚ K60335-2-52(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2부: 전기 구강 위생기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52(전기 구강 위생기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㉛ K60335-2-53(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3부: 사우나용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53(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K60335-2-54(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4부: 액체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54(액체 사용 표면 청소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K60335-2-55(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5부: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55(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K60335-1(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을중 전의적용안전기준인 K60335-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붙임: 주요개정내용

I. 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의규격(IEC) 부합화및 안전관리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 전기기기분야의 국제표준규격인K60335-2-31, 4.0판(가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1부: 레인지후드의 개별요구사항)등을부합화하여안전기준으로제정하고, 동기준을전기용품안전기준의 운용요령에추가 하고자함

II. 주요내용

1.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31(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1부: 레인지후드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2.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32(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2부: 전기마사지기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3.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36(5.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6부: 상업용전기조리레인지, 오븐, 호빛호브소자에대한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4.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37(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7부: 상업용전기튀김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5.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38(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8부: 상업용전기그릴및 그리들그릴에대한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6.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39(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39부: 상업용전기다목적조리팬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7.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40(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및제습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8. [별표I]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41(3.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와의안전성- 제2-41부: 전기펌프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
9.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42(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부: 상업용 전기강제대류형오븐, 스팀형조리기싹틔움대류형오븐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0.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44(3.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4부: 전기 주름펴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1.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48(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8부: 상업용전기그릴과토스트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2.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49(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9부: 상업용전기보온찬장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3.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52(3.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2부: 전기 구강위생기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4.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53(3.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3부: 사우나용전열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5.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54(3.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4부: 액체 또는증기사용가정용표면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6.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2-55(3.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5부: 수족관및정원연못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17.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에K60335-1(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신규제정추가

붙임: K60335-2-31(4.0), K60335-2-32(4.0), K60335-2-36(5.1),
 K60335-2-37(5.0), K60335-2-38(5.0), K60335-2-39(5.0),
 K60335-2-40(4.0), K60335-2-41(3.1), K60335-2-42(5.0),
 K60335-2-44(3.0), K60335-2-48(4.0), K60335-2-49(4.0),
 K60335-2-52(3.0), K60335-2-53(3.0), K60335-2-54(3.0),
 K60335-2-55(3.0), K60335-1(4.0) 등17종안전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84호 (2007. 3. 23.)

계량에관한법률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자기적합성선언)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의자기적합성선언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7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

다 음.

- 제정 이유: 실량표시상품의자기적합성선언에 한세부요구사항규정
- 주요 골자: 총칙, 자기적합성선언조건, 자기적합성선언인절차, 적합성확인기관, 사후관리 및 실량표시상품검사기관에 대하여 규정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위 고시/공고(495)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시행일: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